

## Legal Memorandum

To: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  
From: PJI Legal Department – Matthew McReynolds, Senior Staff Attorney  
Re: SB 1146 에 대한 주요 정보  
Date: 2016 년 7 월 14 일

### 도입

근래들어 많은 캘리포니아 거주인들이 기독교 고등교육에 대한 공격을 골자로 한 SB1146 (상원 발의안) 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 발의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우리 단체에 문의해 왔고, 왜 우리 단체가 이 발의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지 알기 원했다.

SB 1146 은 주요하게 내용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의 발의안에서는 네 섹션에 걸쳐 이를 다루고 있다. 섹션 1 과 2 에서는 종교적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들의 정보공개 의무화 하고 있고, 이는 새롭게 부과된 공개의 의무를 통해 종교적 교육기관들이 전에 없는 곤란을 겪게 할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섹션 3 은 이들 대학들이 결혼과 성에 관련해 기존에 지켜왔던 신학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몇몇 제한적인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차별 소송에 휘말리게 하고 있다. (섹션 4 는 분리항 (a severability clause)이라 불리며 내용적으로 중요치 않다.)

### 주요 조항들의 요약

이 발의안은 최근의 사법위원회의 (Assembly Judiciary Committee) 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발의안은:

- 1) 연방법 Title IX 의 1972 년 교육개정안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하에서, 또는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 평등법안 (the stat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하에서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는 이 주 소재의 어떠한 고등교육기관이라도 재학생과 입학 지원자, 교수진, 직원들에게 종교적 면제 요청의 근거와 면제를 통해 허가되는 활동의 범위에 대해 밝힐 것을 명한다. 공개의 방식을 구체화 한다. 면제를 요청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학생지원위원회 (the Student Aid Commission) 에 어떠한 요청된 면제와 관련된 자료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학생지원위원회 (the Commission) 는 이 정보를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할 것을 명한다.
- 2) 여타의 어떠한 다른 법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 조직의 통제하에 있으며 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생을 등록시키는 고등교육기관은 주가 운영하거나 주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 (Government Code Section 11135) 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며, 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할 시 명시된 대로 개인에 의해 소송당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3) 위 조항은 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주 재정보조를 받는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종교적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다음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 a. 남학생 또는 여학생 전용 주거시설이나 화장실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것 -- 학생들이 이들의 gender identity 에 일치하는 주거시설이나 화장실 편의시설을 제공받는다면.
  - b.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학생들에게 지정된 별개의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것 --- 만약 “기혼”이 결혼한 이성과 결혼한 동성 커플 양쪽을 포함한다면.
  - c. 도덕적 행동규범 (rules of moral conduct) 을 강제하는 것과 이러한 도덕적 행동규범에 부합하는 주거정책을 세우는 것 -- 만약 도덕적 행동규범이 학생들의 sexual orientation 이나 gender identity 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 d. 종교적 관례를 강제하는 것 -- 만약 종교적 관례가 학생들의 sexual orientation 이나 gender identity 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 e. 오직 한쪽 성별의 학생들만 입학할 허가를 하는 것 -- 만약 이 기관이 설립으로부터 전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쪽 성별의 학생들에게만 입학할 허가를 하였다면.
- 4) 만약 종교적으로 통제 되는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이 학생들을 이 종교의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나 이 종교의 다른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며, 이 섹션의 적용이 이 조직의 종교적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발의안의 조항들은 이 종교적으로 통제되는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 5) 이 발의안의 조항들이 종교적으로 통제되는 교육기관이 이 기관의 부동산이 이들의 종교적 교리에 불응하는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할 때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 위 법안의 입법에 따른 주요 질문사항들

이 조항들에 함축된 의미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이 조항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세분화 했다 (답은 PJI 변호사들에 의해 작성됨).

#### **Q: Title IX 이 무엇이며 왜 몇몇 대학들은 이 법에서 면제되는가?**

**A:** Title IX 은 고등교육에서 성의 평등 (gender equity) 을 의무화하는 연방법의 일부로 제정 이후 이미 40 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학교에 스포츠팀의 운영이나 구성과 관련해 성적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하는 법안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법은 예를 들어 어떤 학교가 현재 풋볼팀을 운영하고 있다면 여자 체조팀이나 이와 비슷한 여학생 스포츠팀 또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몇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Title IX 안에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트랜스젠더 권리의 포괄적 창조를 위해 이 법안의 급진적 재해석을 추구해 왔는데, 이는 교육기관에서 남녀간의 차별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도 철폐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몇몇 종교적 대학들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Title IX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면제를 요청해 왔다.

**Q: 왜 주 발의안인 SB 1146 이 연방법인 Title IX 을 언급 (invoke)하는가?**

A: Title IX 은 특정 상황 하에서 특정 종교적 교육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 즉 면제를 허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이 연방법이 종교적 대학들에 면제를 제공한다는 사실과 이 면제가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급진적 재해석을 거슬러 이 종교적 대학들을 보호해 주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반감을 갖고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는 SB 1146 과 같은 주법의 제정을 앞세워 연방법이 보장하는 면제의 권리를 위축시키고자 한다. SB 1146 의 경우 전에 없는 새로운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해 면제를 요청하는 종교적 학교들이 큰 혼란과 곤란을 겪게 하고 있다.

**Q: 어떻게 하나의 주가 연방이 부여한 권리의 주장을 벌할 수 있나?**

A: 우리 단체는 이 발의안을 위헌으로 만드는 몇몇 문제중 하나가 바로 이점이라 생각한다.

**Q: 이 발의안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입법부가 표적으로 삼는 특정 대학들이 있나?**

A: 표적이 되는 대학들이 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의 효력은 결코 표적이 되고 있는 이들 몇몇 대학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입법부는 급진적 LGBT 지지 그룹중 하나인 인권 캠페인 (Human Rights Campaign) 의 보고서를 참고해 왔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입법위원회의 서면 분석에 수차례 반복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와 입법부 분석에서 그동안 Title IX 의 면제권을 행사해 온 주요 교육기관의 이름들이 그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육기관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바이올라 대학 (Biola University), 프레즈노 퍼시픽 대학 (Fresno Pacific University), 윌리엄 제섭 대학 (William Jessup University), 심슨 대학 (Simpson University). 그러나, 이 발의안은 아주사 퍼시픽 대학 (Azusa Pacific University), 캘리포니아 침례 대학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포인트 로마 나자렌 대학 (Point Loma Nazarene University), 벵가드 대학 (Vanguard University), 마스터즈 대학 (Master's University), 웨스트몬트 (Westmont), 로마 린다 대학 (Loma Linda University), 캘리포니아 루터란 대학 (California Lutheran University), 퍼시픽 유니언 컬리지 (Pacific Union College) 및 여러 다른 교육기관들에서도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Q: SB 1146 이 저소득 또는 중산층 가족 자녀들을 위한 캘 그랜트 (Cal Grants; 학자금 보조) 에도 영향을 미치나?**

A: 그렇다. 그사이 이 사안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이 있어 왔고, 입법위원들 스스로도 이 발의안의 재정적 여파를 명확히 예견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발의안은 한 교육기관이 주 재정보조를 받는 학생들을 등록시킬 경우, 이 학교가 주의 재정적 혜택을 입는다고 간주해 이들 학교들에 대한 포괄적 제재 (이 경우 트랜스젠더의 수용) 를 허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받는 주 재정보조는 캘 그랜트 (Cal Grants) 를 의미하기에, 많은 교육기관들은 주의 제재로부터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이상 캘 그랜트를 받아들이지 않는 - 이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들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 고통스런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등록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결과할 것이며 이들 교육기관의 미래 존립에 위협이 될 것이다.

**Q: 이 발의안이 모든 사람들은 여자 또는 남자로 창조되었다를 가르치는 기독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이 원칙을 공공연히 거부하는 학생들을 허가할 것을 명할 수 있나?**

A: 그렇다. SB 1146 은 표적이 된 교육기관들이 주거시설이나 화장실 편의시설의 제공과 같은 영역에 '성정체성' (gender identity) 을 수용할 것을 명할 것이다.

**Q: 교육기관의 결혼에 대한 입장이 SB 1146 하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가?**

A: SB 1146 하에서 표적이 된 기독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들은 더이상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만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발의안은 “결혼”의 정의가 영향을 미치는 학교 정책 (기혼학생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의 실행시 결혼의 정의에 동성간의 결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에 약간의 예외가 허락되긴 하는데, 바로 동성간 혼인시 기독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가 이들의 결혼식 장소로 사용될 수 없게끔 허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LGBT 클럽이 기독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서 모임을 갖고자 할 때 이들 학교가 장소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썩여있다. 그러나, 이것이 LGBT 클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침례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들은 학내에서 LGBT 클럽이 결성되는 것이나 이 클럽이 이 학교의 기본적 교의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부르짖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Q: SB 1146 이 신학교들과 바이블 대학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나?**

A: 현재로서는 SB 1146 이 특정한 바이블 대학들에 어떻게 적용될 지 명확하지 않다. 이 발의안에는 신학교를 위한 제한적인 예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입법부는 아직 이러한 예외가 신학교거나 바이블 degree 수여기관인 동시에 인문 degree 수여기관인 교육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신학교를 위한 제한적 예외의 허가가 이전 버전의 발의안에서는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후의 개정안에서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다.

**Q: 기독교 대학들이 아직 예배 참석을 요구할 수 있나?**

A: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열이 따를 수 있다. 이 발의안은 학내 예배가 금지되는 경우의 방지를 위해 일정한 개정을 거쳤으나, 목회자가 온전히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남녀의 차이나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메시지가 차별적이라 간주될 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복음증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안의 단어들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Q: SB 1146 이 교수진과 직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나?**

A: 이 발의안의 저자인 라라 상원의원은 공청회 (committee hearings) 통해 그의 의도가 오로지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교육기관들이 교수진이나 직원들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면제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발의안의 조항들은 학생들을 비롯해 교수진과 직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Q: SB 1146 의 장기적 영향은 무엇인가?**

A: 현재 캘리포니아는 더 많은 종교적 권리의 행사와 더 많은 교육기관들을 억압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 예로, 캘리포니아는 기독교적 교육기관들이 더이상 “도덕적 행위” (moral conduct) 가 무엇인지 정의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이 주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행위를 비도덕적이지 않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크게 봤을 때, 캘리포니아는 종교적 믿음을 개인의 삶에서 떼내어 교회안으로 가두어 두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기독교적 교육기관들이 로마서 12장 2 절 말씀을 떠나 말 그대로 “세상에 순응해 나갈 것”을 요구하려 한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기독교적 대학들의 통제와 억압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후의 표적은 기독교적 초,중,고등학교와 여타의 비영리단체가 될 것임이 너무도 자명해 진다.

## 행동 지침

만약 당신이 당신의 지역구 의원을 모른다면 <http://findyourrep.legislature.ca.gov>. 사이트를 방문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대표하는 의원 (Assembly member) 을 시작으로, 의원들의 의사당 집무실과 지역구 사무실로 연락해 종교적 교육기관들을 통제하려 하는 주정부의 시도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피력하십시오. 또한, 이 발의안에 맞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당신의 지역구 의원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PJI 는 이메일 발송을 권장하지 않는데, 이는 이메일이 전화나 개인적인 방문에 비해 훨씬 쉽게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발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그간 투표기록을 보기 원한다면 [www.leginfo.ca.gov](http://www.leginfo.ca.gov). 웹사이트를 방문해 “Bill Information” 을 누르고 라라 상원의원의 1146 (1146 by Sen. Lara.) 을 검색하십시오. 이 웹사이트에는 상황 업데이트, 발의안의 이전 버전들, 모든 위원회의 분석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나 교회의 지도자, 소셜 미디어에 이 중요한 이슈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아온 기독교육이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물려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부록 A – 2016 년 6 월 29 일 개정된 SB 1146 본문  
(APPENDIX A – Text of SB1146 as amended June 29, 2016)

**SB-1146 차별: 고등교육.**

**SECTION 1.**

Section 66290.1 이 교육 법안 (Education Code) 에 추가되며, 읽혀지길:

**66290.1.**

- (a) 연방법 Title IX 의 1972 년 교육개정안 Section 901(a)(3) (20 U.S.C. Sec. 1681(a)(3)) 또는 Section 66271 하에서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는 이 주 소재의 각각의 고등교육기관은 재학생과 입학 지원자, 교수진, 직원들에게 종교적 면제 요청의 근거와 면제를 통해 허가되는 활동의 범위에 대해 밝힐 것을 명한다.
- (b) (a) 에서 요구하는 공개는 아래의 모든 방식을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 a. 공개된 사항들은 캠퍼스나 학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눈에 잘 띄는 곳’이란 주행정관의 내부나 해당 교육기관의 규율, 규정, 절차, 행동규범 (standards of conduct) 이 게시되는 장소(들)를 의미한다.
  - b. 공개된 사항들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지원자들에게 배포되는 문서자료에 게재되어야 한다.
  - c. 공개된 사항들은 매 해당 쿼터, 시메스터, 여름학기의 시작에 실행되는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d. 공개된 사항들은 교수진, 행정직원, 보조직원 각각에게 매 학년 첫 쿼터나 시메스터에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된 사항은 각각의 신규 고용인의 고용시 제공되어야 한다.
  - e. 공개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의 광범위한 규율, 규정, 절차, 행동규범 (standards of conduct) 이 설명된 당 교육기관의 어떠한 인쇄물에도 게재되어야 한다.

**SEC. 2.**

Section 66290.2 가 교육 법안 (Education Code) 에 추가되며, 읽혀지길:

**66290.2.**

- (a) 연방법 Title IX 의 1972 년 교육개정안 Section 901(a)(3) (20 U.S.C. Sec. 1681(a)(3)) 또는 Section 66271 하에서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는 이 주 소재의 각각의 고등교육기관은 주나 연방기관에 면제 허용과 관련해 제출했거나 이 기관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자료의 복사본을 학생 지원 위원회 (Student Aid Commission) 에 제출해야 한다.
- (a) 학생지원위원회는 (a) 항에 따라 받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며 당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면제를 요청했던 교육기관들과 각 기관의 면제요청 근거에 대한 리스트를 게시하고 유지해야 한다.

**SEC.3.**

Section 11135.5 가 정부 법안 (Government Code) 에 추가되며, 읽혀지길:

#### 11135.5.

- (b) 여타의 어떠한 다른 법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 조직의 통제하에 있으며 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생을 등록시키는 고등교육기관은 Section 11135의 규정을 받으며, 이 섹션을 위반할 시 Section 11139에 기술된 대로 개인에 의해 소송당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c) 이 섹션은 섹션 (a)에서 기술된 고등교육기관이 다음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해선 안된다:
  - a. 남학생 또는 여학생 전용 주거시설이나 화장실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것 -- 학생들이 이들의 gender identity에 일치하는 주거시설이나 화장실 편의시설을 제공받는다면.
  - b. 주로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학생들에게 지정된 별개의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것 --- 만약 “기혼”이 결혼한 이성과 결혼한 동성 커플 양쪽을 포함한다면.
  - c. 도덕적 행동규범 (rules of moral conduct)을 강제하는 것과 이러한 도덕적 행동규범에 부합하는 주거정책을 세우는 것 -- 만약 도덕적 행동규범이 학생들의 sexual orientation이나 gender identity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 d. 종교적 관례를 강제하는 것 -- 만약 종교적 관례가 학생들의 sexual orientation이나 gender identity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 e. 오직 한쪽 성별의 학생들만 입학할 허가 하는 것 -- 만약 이 기관이 설립으로부터 전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쪽 성별의 학생들에게만 입학할 허가했다면.
- (d) 이 섹션은 (a)항에서 기술된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이러한 교육기관의 목적이 학생들을 이 종교의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나 이 종교의 다른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며, 이 섹션의 적용이 이 조직의 종교적 교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이다.
- (e) 이 섹션은 (a)항에서 기술된 교육기관이 이 기관의 부동산이 이 조직의 종교적 교리와 불일치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할 때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
- (f) 섹션 11135와 11139의 조항들과 이 섹션을 제외하고, 이 article은 (a)항에서 기술된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

#### SEC.4.

이 법안의 조항들은 분리해 낼 수 있다. 이 법안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적용이 효력을 상실한다면, 이 효력의 상실이 이러한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조항들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상원 사법위원회 분석으로 부터 (from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analysis):**

주제: 고등교육: 차별금지

주요 쟁점:

- 1) 법이 주 기금을 받으며 Title IX 으로부터의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는 컬리지나 대학들에게 종교적 면제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재학생과 입학지원자, 교수진과 직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나?
- 2) 종교적 조직의 통제하에 있으며 주 재정정보를 받는 컬리지나 대학들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반차별 법의 규정을 받아야 하는가?

개요:

이 발의안은 공사립 구분없이 모든 비종교적 학교의 학생들이 누리는 권리와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종교적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의 학생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발의안은 주 보조를 받거나 주 보조로부터의 혜택을 받는 어떠한 종교적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도 정부법안 섹션 11135 (Government Code Section 11135; 이 법안은 주에서 운영하거나 주 기금이 투입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차별을 금지한다) 의 동일한 규정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종교적인 사립학교들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 몇몇 예외나 면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예외나 면제가 gender identity 나 sexual orientation 에 대해 차별적이어서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고등교육기관이 Title IX 의 종교적 면제를 요청할 경우 학생, 교수진, 직원들에게 면제요청의 근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교수진, 직원들은 예외나 면제로 인해 생기는 제한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으며, 입학여부의 결정이나 재직이나 취업여부의 결정시 이 정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위원회 (Committee) 가 심의중인 발의안은 이전 발의안으로부터 대폭 개정을 거친 상태라 이전 발의안의 지지자나 반대자들이 아직도 현 발의안에 동일한 지지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취할 것인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양측 입장의 개괄적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법안의 저자, 후원자, 지지자들은 학생들, 특히 LGBT 학생들이 불법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종교적 교육기관에 이들의 믿음과 모순되는 행위를 수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나, 이들의 캠퍼스나 시설이 모순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더라도 이를 허가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개정조항 제 1 조 (the Free Exercise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요약: 이 발의안은 Title IX 법안과 관련 규정에 면제를 요청하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들이 학생, 교수진, 직원에게 면제요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이 컬리지와 유니버시티들이 주가 제정한 반차별법에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구체적으로 이 발의안은:

SB 1146

- 3) 연방법 Title IX 의 1972 년 교육개정안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하에서, 또는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 평등법안 (the stat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하에서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는 이 주 소재의 어떠한 고등교육기관이라도 재학생과 입학 지원자, 교수진, 직원들에게 종교적 면제 요청의 근거와 면제를 통해 허가되는 활동의 범위에 대해 밝힐 것을 명한다. 공개의 방식을 구체화 한다. 면제를 요청하는 고등교육기관은 학생지원위원회 (the Student Aid Commission) 에 어떠한 요청된 면제와 관련된 자료라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며, 학생지원위원회 (the Commission) 는 이 정보를 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할 것을 명한다.



- 1) 여타의 어떠한 다른 법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 조직의 통제하에 있으며 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생을 등록시키는 고등교육기관은 주가 운영하거나 주가 재정지원을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법 (Government Code Section 11135) 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며, 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할 시 명시된 대로 개인에 의해 소송당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2) 위 조항은 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주 재정보조를 받는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종교적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다음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 a. 남학생 또는 여학생 전용 주거시설이나 화장실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것 -- 학생들이 이들의 gender identity 에 일치하는 주거시설이나 화장실 편의시설을 제공받는다면.
  - b. 주로 기혼이거나 미성년 자녀와 동거하는 학생들에게 지정된 별개의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것 --- 만약 “기혼”이 결혼한 이성과 결혼한 동성 커플 양쪽을 포함한다면.
  - c. 도덕적 행동규범 (rules of moral conduct) 을 강제하는 것과 이러한 도덕적 행동규범에 부합하는 주거정책을 세우는 것 -- 만약 도덕적 행동규범이 학생들의 sexual orientation 이나 gender identity 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 d. 종교적 관례를 강제하는 것 -- 만약 종교적 관례가 학생들의 sexual orientation 이나 gender identity 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 e. 오직 한쪽 성별의 학생들만 입학할 허가 하는 것 -- 만약 이 기관이 설립으로부터 전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쪽 성별의 학생들에게만 입학할 허가했다면.
- 3) 만약 종교적으로 통제 되는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이 학생들을 이 종교의 목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나 이 종교의 다른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며, 이 섹션의 적용이 이 조직의 종교적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 발의안의 조항들은 이 종교적으로 통제되는 고등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다.
- 4) 이 발의안의 조항들이 종교적으로 통제되는 교육기관이 이 기관의 부동산이 이들의 종교적 교리에 불응하는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할 때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현존하는 법:

- 1) 이 주의 고등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들의 개인적 disability, gender,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nationality, race or ethnicity, religion,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basis that is contained in the prohibition of hate crimes as set forth in the Penal Code including the perception that the person has any of those characteristics or that the person is associated with a person who has, or is perceived to have, any of those characteristics 와 무관하게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하에서 이 주의 정책임을 천명한다. (Education Code Sections 66251 and 66260.6.)
- 2) 어떠한 고등교육기관이 주 재정보조를 받거나 이 재정보조로 부터의 혜택을 받거나, 또는 주 학자금보조 (state student financial aid) 를 받는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경우 이 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어느 누구도 disability, gender,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nationality, race or ethnicity, religion,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basis that is contained in the prohibition of hate crimes as set forth in the Penal Code 를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Education Code Section 66270.)

- 3) 어떠한 고등교육기관이라도 state financial assistance 나 state financial aid 의 수령 이전에 이 기금의 관리기관에 이 교육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라도 고등교육평등법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과 성적 차별을 금지하는 여타의 모든 적용 가능한 법적 조항들을 준수해 진행될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 (Education Code Section 66290.)
- 4)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의 적용이 어떠한 종교적 조직의 교리와 모순된다면 이 법은 이 종교적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교육기관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다. (Education Code Section 66271.)
- 5)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은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Education Code Section 66292.4.)
- 6) 이 주의 관할사법권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Unruh Civil Rights Act 하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들의 sex, race, color, religion, ancestry, national origin, disability, medical condition, genetic information, marital status, sexual orientation, citizenship, primary language, or immigration status 와 무관하게 모든 종류의 비즈니스 영업장소에서 편의시설, 이해, 시설, 특권, 서비스에 온전하며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Civil Code Section 51.)
- 7) 이 주 안의 어느 누구도 race, national origin, ethnic group identification, religion, age, sex, sexual orientation, color, genetic information, or disability 을 근거로 주나 주 기관에 의해 실시, 운영, 관리되거나, 또는 주의 기금이 직접 투입되거나, 또는 주의 재정보조를 받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온전하며 동등한 접근을 불법적으로 거부당해서는 안되며, 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불법적인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 조항들은 여타 권리나 보상과 별개인 equitable relief 를 위한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Government Code Sections 11135 와 11139.)

주 재정 (Fiscal) 에 미치는 영향: As currently in print this bill is keyed fiscal.

논평: 저자에 따르면, 이 발의안은 공사립 구분없이 모든 비종교적 학교의 학생들이 누리는 권리와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종교적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의 학생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발의안은 주 보조를 받거나 주 보조로부터의 혜택을 받는 어떠한 종교적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도 정부법안 섹션 11135 (Government Code Section 11135) 의 동일한 규정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종교적인 사립학교들에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현존하는 반차별법들의 가장 엄격한 적용을 일정 완화시키려 한다.

한 예로, 종교적 학교는 특정한 주거시설을 기혼자에게만 지정할 수 있고, 이들 학교들의 종교적 교리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동규범 (rules of moral conduct) 을 강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종교적 관행의 실행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러한 규율이 sexual orientation 이나 gender identity 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모두 실행이 허용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발의안은 Title IX 이나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으로부터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는 어떠한 고등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재학생, 교직원, 직원들에게 면제 요청의 근거와 범위에 대해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발의안은 종교적인 컬리지나 대학들이 한편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도덕적 행동규범 (codes of moral conduct) 을 강제하거나 학교정책을 집행하려 할 때 주의 차별방지법 (gender identity 나 sexual orientation 에 근거한) 이나 차별방지 정책의 준수를 요구함으로써 균형을 맞출 것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종교적인 믿음이 인종차별을 위한 구실이 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근래의 우리사회는 점진적으로나마 종교적인 믿음이 sexual orientation 이나 gender identity 를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에 구실을 주어서 안된다는 입장을 수용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에 반대하고 이를 규탄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의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던 현재는 주의 기금이 어떤 형태의 차별에도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 명확한 법이며 정책이다.

이 발의안의 반대자들은 이 발의안이 종교에 기반해 여하한 방식으로든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주법은 주가 운영하거나 주의 재정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모든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에 기반한 차별 또한 금지하고 있다. 더우기, 이 주는 종교를 대상으로 한 차별을 용납할 뿐 아니라, 종교적 학교들이 스스로의 선택해 의해 이들 종교의 교인만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차별적 입학제도를 실행하는 것도 허가하고 있다. (Government Code Section 12940 and 12926.2(a)-(f).) 오직 소수의 종교적 학교들만이 실재로 이러한 방식의 입학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더 광범위한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학교측의 의도임과 동시에 주로부터의 보조를 잃지 않기 위한 학교측의 선택이기도 하다—만약 이 학교들이 특정 종교의 학생들만 입학 시킬 경우 Government Code Section 11135 하에서 주로부터의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배경: Title IX 과 종교적 면제: 현존하는 연방법 Title IX 의 1972 년 교육개정안 (Title IX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은 연방 기금을 받거나 이로부터 혜택을 얻는 교육기관들의 성적 차별을 금지한다. 아마도 이 법은 학교의 체육 프로그램들에 학교측의 동일한 기금 할당을 요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을 텐데, 이 외에도 Title IX 은 성차별에 연관된 학업, 과외활동, 행정 관련 문제들도 다루고 있다. 이 법은 입학사정에서 뿐만 아니라, 주거와 시설, 교과 과목들과 다른 교육적 활동, 상담, 학생재정보조, 학생 건강과 보험혜택, 혼인 상태와 자녀의 유무, 체육활동 등을 포함해 입학 후 학교측의 학생들에 대한 대우에도 적용된다. Title IX 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예외가 바로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대학교 (학부과정에서만) 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는 현존하는 다수의 역사적 남학교와 여학교의 수용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대학원과 프로페셔널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남녀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Title IX 은 이 법의 적용이 특정 종교적 조직의 교리와 모순될 때 이 종교적 조직의 통제를 받는 교육기관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4 CFR Section 106.12) 이 동일한 원칙—실재로 거의 동일한 언어로 표현된—이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Title IX 하에서 어떠한 교육기관이 아래 나열된 사항들 하나 이상을 만족시키면 “종교적 조직의 통제하에 있다”고 고려된다.

- 1) 이 교육기관이 신학교 또는 신학 디파트먼트일 때로 (설령 한 교육기관의 branch 나 department 처럼 존재할 지라도) 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이 학생들을 이 기관이 표방하는 종교의 목회자로 준비시키는 데 있거나, 신학 교육자 같이 다른 형태의 종교적인 직업을 갖게 준비시키는 데 있다;
- 2) 이 교육기관의 교수진, 학생들, 직원들에게 이 조직이 표방하는 종교의 교인이 될 것을 요구하거나, 내지는 이 종교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를 요구한다;
- 3) 이 교육기관의 헌장이나 다른 공식적 출간물에 이 기관이 종교적 조직의 통제를 받고 있고, 통제하는 조직에 의해 이 기관의 이사회 멤버들이 지정되었으며, 이 통제하는 조직으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명확한 언급이 있다.

면제를 요청하는 교육기관은 일반적으로 미교육국 (U.S. Department of Education (DOE)) 에 Title IX 의 어떤 구체적 조항이나 규정이 이 종교의 어떠한 구체적 교리와 충돌하는지 설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34 CFR 106.12 (b).) 미교육국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면제요청서 복사본과 이에 대한 미교육국의 응답을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면제 요청들은 어느정도 관대하게 허가되어졌다. 실제로 교육국이 Title IX 의 종교적 면제를 요청하는 학교들에 더 자세한 정보를 서면 요청한 적은 있으나, 이 학교들의 면제 요청이 딱 잘라 거부되었던 적은 없다고 보여진다. 근래들어 교육국은 LGBT 그룹과 인권그룹들의 압력에 응해 관련문서들을 교육국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 즉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Pepperdine University), 는 1976 년 부터 지속적으로 Title IX 의 종교적 면제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페퍼다인 유니버시티 (Pepperdine University) 는 최근 면제 취소를 요청했는데, 아마도 마치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변해왔던 것처럼 초기에 면제를 요청하게 했던 이슈들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등교육평등법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Title IX 과 유사하게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도 차별을 금지한다. Title IX 은 성적 차별만을 금지하나 (근래의 선례와 정책 메모안에서의 성적 차별은 sexual orientation 과 gender identity 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아래 나열된 suspect classifications 에 근거한 여러 형태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disability, gender, gender identification, gender expression, nationality, race or ethnicity, religion,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basis that is contained in the prohibition of hate crimes as set forth in the Penal Code.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은 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는 학생들을 등록시키는 것을 포함해 주 보조를 받거나 그로부터의 혜택을 누리는 어떠한 고등교육 기관에라도 적용된다. 주 보조를 받기 원하는 어떠한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도 주의 기금관리 기관에 이 법안을 준수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주어야 한다. 이 법안은 Title IX 처럼 종교적 면제를 허가하는데, 만약 이 법안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그 적용이 특정 조직의 종교적 믿음에 모순된다면 이 법안은 이 종교적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교육기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B 1146 하에 종교적 면제에 대한 공개: 이 발의안은 연방 Title IX 법이나 관련 규정 하에서 종교적 면제를 요구하거나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하에서 종교적 면제를 요구하는 어떠한 고등교육기관들이라도 이들 학교의 학생, 교수진, 직원들에게 면제요청의 근거와 면제시 허가되는 활동의 범위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 교수진, 직원들은 면제로 인해 결과된 어떠한 제한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게 될 것이며, 이 정보는 이들이 학교 입학여부나 재직이나

취업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공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학교들이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어느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도 Section 11135 (이 발의안에 의해 개정된 대로) 을 비롯해 고등교육평등법 (the Equity in Higher Education Act) 및 여타의 적용 가능한 주와 연방의 모든 차별금지법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Free Exercise Issues: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발의안이 미헌법 개정 제 1 조 the Free Exercise Clause (the Free Exercise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가 이들에게 부여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미헌법 개정 제 14 조 (the Fourteenth Amendment) 에 의해 통합된대로, 이 the Free Exercise Clause 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에 침해가 되는 법의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대법원의 여러 판결을 통해 해석되었던 바, the Free Exercise 란 일반적으로 정부가 종교를 근거로 어느 개인도 차별할 수 없으며, 보다 중요하게,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채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The Free Exercise Clause and “Laws of General Applicability”’: 그간 법정들이 Free Exercise 케이스들을 다루며 대면해 온 보다 까다로운 이슈는 종교라는 이름 하에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말하자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목적이 종교를 도모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닌 법으로부터 어디까지 면제를 허용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적용이 특정상황하에서 어느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면제가 허가되어야 하나? 한 극단으로, 거의 모든 이들이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할 것이며,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종교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살인판결의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법정들은 헌법이 상당히 제한적 상황하에서는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을 위해 합리적인 수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판결내렸다. 한 예로, 법정들은 주가 종교적 휴일 (Sabbath) 에 일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진 이가 종교적 휴일에 일해야만 하는 직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개인에게 실직수당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판결내려왔다; 또한, 주가 의무적 교육법을 통해 자녀가 16세가 될 때 까지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규정해도, 아이쉬들은 8학년 이후 그들의 자녀들을 더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종교적 믿음의 수용을 요구하는 소수의 위와 같은 선례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 Scalia 대법관이 Employment Division v. Smith 케이스에서 피력한 다음의 시각이 지배적임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the Free Exercise Clause 는 주가 개인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laws of general applicability)” 으로부터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법이 어떠한 종교적 목적에 의해서도 의도되지 않았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한 헌법은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주들이 종교적 믿음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을 택했다 할지라도 이 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면 헌법은 면제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Employment Division,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of Oregon v. Smith (1990) 494 U.S. 872 (the Free Exercise Clause 는 적법한 법을 준수할 것으로부터 개인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cf. Sherbert .v Verner (1963) 374 U.S. 398 (개인이 종교적 휴일 (Sabbath) 에 일해야 하는 직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인의 실직수당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종교실행의 권리 (free exercise of religion) 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Wisconsin v. Yoder (1972) 406 U.S. 205 (The First and Fourteenth Amendments 은 주가 아이쉬 부모에게 그들의 아이들을 16 세까지 학교에 보내라고 강제하는 것을 막는다고 판결했다.)

Government Code Section 11135 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이며, The Free Exercise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은 종교적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물론 주가 면제를 허가할 것을 택할 수는 있다). Section 11135 는 주가 운영하는 대중적 프로그램이나 활동, 또는 주가 기금을 투입하는 대중적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을 금지한다. 이 법은 종교적 목적에 의해 의도되지 않았고, 종교를 도모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다른 반차별법과 같이 disability, gender,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nationality, race or ethnicity, religion, sexual orientation, or any other basis that is contained in the prohibition of hate crimes as set forth in the Penal Code 에 근거한 차별의 금지를 추구한다. 정부 스스로 면제의 제공을 통해 종교를 수용하고자 할 수는 있어도, 면제의 제공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개인이나 단체가 이 법이 적용됨으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믿는다면, 소송을 통해 이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면제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든 없든 마찬가지일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이와 관련해 이미 하나의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캘리포니아의 고등교육평등법은 만약 이 법의 적용이 어떠한 종교적 조직의 교리와 충돌한다면 이 종교적 조직의 통제하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위해 면제를 허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남아있는 이슈 / 저자가 고려하기 원할 수 있는 헌법의 개정안들 (Amendments): 이 발의안이 committee 에서 통과되어 the Assembly Committee on Appropriation 로 상정될 시 저자가 고려하기 원할 몇가지 커다란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 발의안의 목적은 지지하나 발의안이 허용하는 다양한 면제나 Government Code Section 11135 에서 적용이 “제외된 사항들” 에 대해 불만을 갖는 그룹이 이미 the Committee 에 이들의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첫째로, 이 발의안의 목적을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 발의안이 제공하는 면제가 모호하다는 데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새로 제안된 section 11135.5 의 subdivision (b) 의 세번째 문장 (3) 에 따르면 학교들은 이 학교들의 행동규범이 (rules of moral conduct) 학생들의 sexual orientation 나 gender identity 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 규범을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이 의도하는 바는 학생 개인의 sexual orientation 과 무관하게 학교의 행동규범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발의안 면제항의 모호함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은 종교적 학교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제로는 LGBT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규범을 작성해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단적인 예로, 학교가 동성애적 행동을 금하는 행동규범을 강제할 때 이 규범이 실제로 동성애자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해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범이란 이유를 들어 이 규범의 강제가 차별적이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학교가 “남색”을 금지할 때 “남색”을 동성애적 남색에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들의 행동규범이 공평치 않게 적용될 것이란 예측도 있는데, 이는 혼전결혼의 금지라는 행동규범이 동성애적 관계에만 적용되며, 남녀의 관계에선 무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의 저자는 명확히 학교마다의 행동규범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것을 의도했을 것이며, 이러한 공평성이 “sexual orientation 이나 gender identity 와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는 발의안의 요구조항들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것이다.

둘째로, 몇몇은 제안된 (c) 항이 학생들이 종교적 직업을 가질 수 있게 준비시켜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기관” 자체를 면제해준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한 예로, 이 조항은 신학교를 면제해 준다. 신학대학생들에게 신학교가 행동규범- 성적 행위에 관련된 행동규범이나 종교적 가르침에 반하는 입장의 주장에 관련된 행동규범 등—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기관의 모든 고용인, 즉 모든 교수진이나 직원들이 종교적 직업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기관 전체에 대한 면제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이에 더해, 몇몇 기관들은 종교적 직업을 위한 훈련과 보다 일반적인 과목들을 함께 제공해 이 기관의 주된 “목적”이 종교와 관련된 직업적 훈련인지 일반 교육인지 명확히 파악하기 힘들게 하기도 하다. 작년에 이 Committee 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위 “성직자 면제 (ministerial exemption)” 의 원칙, 즉 성직자는 노동법하에서 고용인이 아니라는 원칙이 카톨릭 학교의 교직원에게 적용됨에 따라 어떤 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기 위해 이 원칙에 대한 정보공청회 (information hearing) 를 열었던 바가 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성직자 면제” 원칙이 주노동법의 범망을 피하기 위해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자는 면제가 “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하는 개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제한하기 원한다면 결국 이 (c) 항의 개정에 대해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 몇몇은 Section 11135.5 의 (d) 항이 LGBT 학생들이 학내에서 만남을 갖는 것을 막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것도 명확히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 (d) 항은 이 발의안의 조항들이 어떤 교육기관이 이 기관의 부동산이 이들의 종교적 교리에 불응하는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 할 때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d) 항의 목적은 몇몇 발의안 반대자들이 이 발의안이 교내 교회에서 동성결혼식이 치뤄지게 강제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표한데 대해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의 의미 또한 명확해 질 필요가 있는 만큼 저자는 다음의 committee 에서 개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몇몇은 이 발의안이 제공하는 배상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데 우려를 표해 왔다. 이 발의안은 발의안 조항들의 어떠한 위반도 Section 11139 에서 기술한 바 개인에 의한 소송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Section 11139 는 Section 11135 가

여타의 보상과는 개별적인 equitable relief 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달리 말해,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에게 반해 가해졌던 차별적 행위를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소송을 결과한 정책을 폐지하게 하거나 등 학교측이 개정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법정 명령만 얻을 수 있고,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불분명한 것은 승소한 원고가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승소한 측은 성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가 “American Rule”을 따른다는 것인데 이는 성문법이나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각각이 스스로의 변호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의 Section 1021.5 (California Code of Civil Procedure Section 1021.5) 에 따르면 “소송이 공공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의 강제나 집행을 결과한다면 법정이 승소한 측에게 변호사비용 수여를 허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발의안 하에서 원고는 법정명령 및 변호사 비용 또한 수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저자가 승소한 측에 변호사 경비를 수여하기 원한다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최소한 변호사 경비의 수여라도 없다면, 학생이 자신의 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를 구하는 것은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 지 모른다.

찬성과 반대의 일반적 논쟁: The committee 에 제출된 모든 찬반의 편지들이 각각 다른 버전의 발의안을 언급하고 있고, 더이상 발의안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상술하고 있기에 이 분석은 이러한 편지들을 요약하는 관례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발의안의 주요 정책목표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은 최소한 개괄적인 선에서 간략히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의안의 의도를 지지하는 자들은 비종교적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재학하는 친구들이 누리는 권리와 보호를 종교적 컬리지와 유니버시티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기 위해 이 발의안의 재정이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이들은 대학 캠퍼스의 LGBT 학생들이 sexual harassment and assault, depression and suicide 으로부터 불균형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연구사례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LGBT 학생들이 학교로부터의 공식적 차별까지 대면해야 하는 부가된 짐을 안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지지자들은 거시적으로는 이 발의안의 정책적 목표가 LGBT 학생들에 대한 진보적이며 논리적인 민권의 연장이라고 본다. 어느 누구도 인종에 근거해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는 컬리지가 주 기금과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심각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gender identity 와 sexual orientation 을 근거로 차별을 허가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법과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의 입장은 미헌법 개정조항 제 1 조의 종교자유의 보장에 근거해 있다. 이들은 종교적 컬리지와 유니버시티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종교적 가르침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측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만약 학생들이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기 원치 않는다면 다른 학교에 재학해야 할 것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종교적 학교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이 총체적이며, 영적인 삶과 교육적인 삶이 그렇게 쉽사리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종교적 학교들은 주 기금을 받기위한 조건으로 이들 종교적 학교들의 종교적 믿음에 불일치하는 행위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법, 즉 공공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이 학교들이 헌법적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법은 사실상 “위헌적 조건”을 구성한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반대측은 발의안에 허용된 개인의 소송권리가 종교적 학교를 비싼 소송에 처하게 할 것이라 주장한다.

관련 법안: AB1888 (Low) 은 캘 그랜드 (Cal Grants) 학생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떠한 기관도 참여의 조건으로 당 기관이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gender expression, among other things 에 근거해 어떠한 학생에 반해서도 차별하지 않을 것과, 당 기관이 연방 Title IX 하에서 종교적 면제를 갖거나 신청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이 발의안은 the Assembly appropriation committee 에 held on suspense.

등록된 찬반 단체

찬 (발의안의 이전 버전에 대해)

반 (발의안의 이전 버전에 대해)